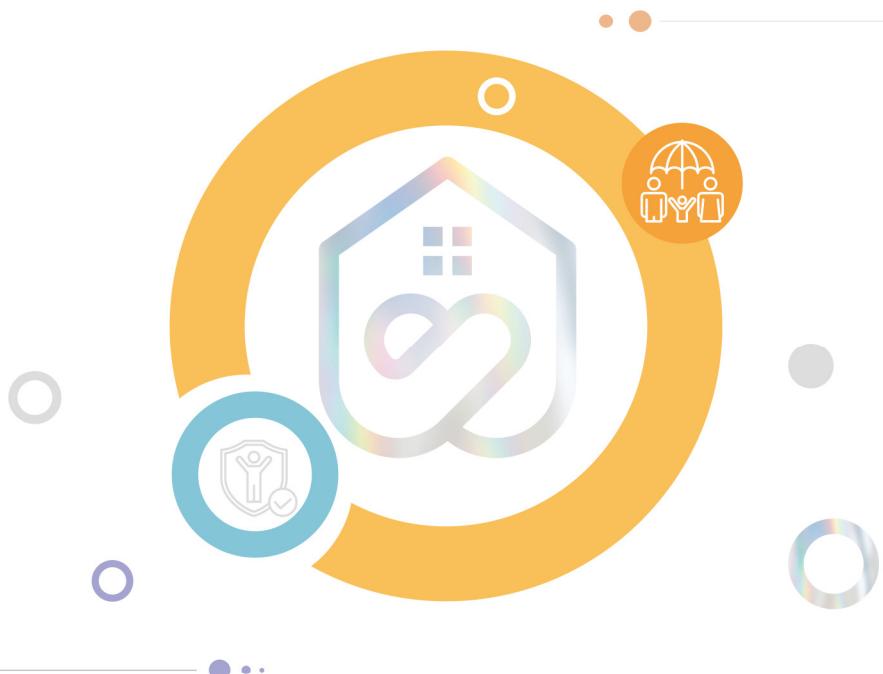


발간등록 번호
진흥원-2025-320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CONTENTS

I

사례집 제작 목적 및 구성방향

1. 목적	2
2. 구성방향	3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른 사례

1. 무고	6
2. 상해와 폭행	9
3. 협박	12
4. 명예훼손·모욕	16
5. 업무방해	19
6. 손괴	22
7. 성폭력 범죄	24
8. 성희롱	26
9. 불법정보유통 행위	28
10.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32
11.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33
12. 부당업무 강요 행위	35
13.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38
14.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40

III

부록

1.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 안내	44
2.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료집 안내	55

I

사례집 제작 목적 및 구성방향

- 1. 목적 2
- 2. 구성방향 3



01 목적

- 보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침해 유형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보육교직원의 예방·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이 겪는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침해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보육현장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제시함

보육활동

- 보육활동이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대소집단·개별 활동, 놀이, 행사, 등·하원, 영유아의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함

보육활동 침해

- 보육활동 침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라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

-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임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란?

-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 영유아의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보호자에 포함됨

02

구성방향



※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체계 개발 연구」 및 「교원지위법」 등을 기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내 보육활동 침해 유형을 법제화할 예정임('26년)

✓ 현장 기반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분류

-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침해 사례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함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침해 사례 제시

- 보육교사·원장 등이 경험한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법률 및 보육현장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돋도록 함

✓ 침해 행위 관련 법령 및 근거 정보 제공

-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관련 법률, 보호지침, 행정절차 등 정확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정보 제공

✓ 대응 방법과 상황별 적용 예시 제시

- 보육교직원이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경험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률 및 보육현장 전문가가 제시하는 상황별 대응 절차 등을 함께 제시함

✓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 방법 안내

-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교직원이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의 주요 서비스와 이용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함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른 사례

1. 무고	6
2. 상해와 폭행	9
3. 협박	12
4. 명예훼손·모욕	16
5. 업무방해	19
6. 손괴	22
7. 성폭력 범죄	24
8. 성희롱	26
9. 불법정보유통 행위	28
10.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32
11.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33
12. 부당업무 강요 행위	35
13.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38
14.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40

01 무고



개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156조(무고)

● 무고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nput type="checkbox"/>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input type="checkbox"/>
허위 사실(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input type="checkbox"/>
관할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어린이집 원아가 하원 후, 보호자가 전자알림장에 “선생님, 우리 아이 팔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라고 글을 올렸어요. 다음 날, 원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를 열람했죠. 어린이집에서 생긴 상처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의 상대방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고, 이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관련 판례)

대법원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만약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상담사례 2

Q

원아가 “선생님이 때렸어”라고 했다며 보호자는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CCTV 확인 결과 아동학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 되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이의 말만 믿고, 혹은 아이의 말을 왜곡해서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고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데(형법 제156조), 이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방법 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어린이집이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가 한 진술을 보호자가 신뢰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무고죄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3

Q

원아가 가정에서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때렸어”라고 말해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했어요. 보호자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때렸다면서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라고 주장하며 구청에도 아동학대 교사가 있다고 민원을 넣고, 구청장과도 면담하고 싶다고 해요. 현재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신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령 고소(신고)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은 신고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설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호자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면서(혹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관련 판례)

법원은 유치원 교사가 4세인 자신의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말과 본인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근거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를 확인하였지만 학대행위나 폭행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유치원 교사들의 휴대폰까지 확인해서 삭제된 영상파일이 있는지 까지 확인하였으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이러한 신고로 인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 교사와 유치원에 발생하는 낙인효과까지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692판결).

02

상해와 폭행



개념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 상해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몸에 상처를 입거나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행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직접적인 유형력(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행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행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이 있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예: 손으로 밀치기, 물건을 던지기, 위협적으로 다가가기 등)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원아가 바깥놀이를 하다가 넘어져 다쳤어요. 다음 날,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찾아와 원장에게 물건을 던지면서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물건을 던진 순간, 원장을 맞추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를 직접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

Q

보육실에서 원아들이 리본막대로 신체를 움직이며 놀이를 하던 중이었어요. 원아 한 명이 리본막대를 움직이던 과정에서 옆에 있던 친구 얼굴과 접촉하여 얼굴에 극히 상처가 발생했어요. 원아의 보호자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담임교사인 저의 어깨와 등, 팔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어떻게 할 거야! 상처가 흉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몸에 명이 세게 들고 맞은 곳이 아파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보호자가 교사의 어깨·팔을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손바닥 타격으로 인해 명, 통증 등이 발생 했으므로 상해죄(형법 제257조)도 성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 보호자의 발언, 신체 접촉 부위 등을 일지·사진으로 기록하고, CCTV가 있다면 보존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3

Q

원아가 보호자에게 선생님이 머리를 때렸다고 말한 이후, 보호자가 골프채를 들고 어린이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담임교사에게 나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보호자는 저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치면서 욕을 하고, 아동학대한 교사라고 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보호자가 골프채를 들고 와 교사를 위협하고 신체적·언어적 폭행을 가한 경우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손가락으로 교사의 머리를 '툭 치는 것'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고의적 신체 접촉이면 성립하므로 교사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치며 위협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





03 협박

개념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283조(협박)

○ 협박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input type="checkbox"/>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위협을 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 풀어의 경우, 단순한 윤설을 넣어 보율교사에게 원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원아가 보육실에 있는 의자에 올라가 점프를 하면서 뛰어내렸고, 무릎에 멍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에 보호자는 담임교사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 다쳤다고 인터넷에 다 퍼뜨릴 거예요.”라고 협박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A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안전사고로 인해 어린이집을 방문한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실제 어린이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보육
현장

A 첫째, 보호자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무엇보다 아이가 다친 경우 보호자가 느끼는 놀람과 불안감에 대해 충분히 진심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을 수용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부의 안전사고 대처를 재검토하세요.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매뉴얼을 원내 게시판과 보육실 내 게시판에 부착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명확히 검토 및 공유하고 외부적으로는 원장과 교사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란으로 상처 입은 영유아와 교직원들의 심리적 지원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www.dampool.com) 심리상담 및 마음 UP 검사(www.kcpi.or.kr/mind4u)를 통해 보육교직원 대상 심리상담 또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어 마음을 굳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셋째,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반복하여 협박 행위가 나타날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원장이나 교사가 보호자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보호자의 감정이 폭발하여 불편한 언행이나 협박이 나타나는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안내하고, 면담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자리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2

Q 원아가 가정에서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어린이집에서 잘 먹는지 학기 초부터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것을 넘어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시간에 먹는 사진을 찍어 전자알림장을 통해 올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매번 사진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하자, 보호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어린이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구청장이 있어서 말만 하면 어린이집은 폐원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보호자가 “구청장을 알고 있다”,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어린이집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담사례 3

Q 보육실에서 원아들이 신체놀이를 하다가, 한 원아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를 세게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친 원아의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다칠 동안 무엇을 했나며 화를 내고 상대 원아의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쳤어요. 보호자의 친척이 언론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 신문이나 뉴스에 제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기만두지 않는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다 알고 있어 집 주소도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호자는 친척이 언론사에 재직 중으로 모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보육교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어 집 주소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보육교직원이 공포심을 갖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관련 판례)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대해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략)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판결).





04 명예훼손·모욕

개념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input type="checkbox"/>
특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적었거나 전달	<input type="checkbox"/>

● 모욕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input type="checkbox"/>
특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비난, 비하, 무시, 경멸적 표현을	<input type="checkbox"/>
언어적, 비언어적, 시각적으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p>Q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원아가 있어 보호자에게 식품알레르기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드렸어요. 보호자가 계속 제출하지 않아, 저는 원아의 건강과도 직결된 부분이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보호자는 다른 보호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p>

‘보육교사 주제에 의사도 아니면서 왜 달라고 하느냐, 에이 C,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하느냐’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 A 보호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특정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욕설 등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행위 태양이나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정도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바, 보호자와의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 또는 녹취물, 비존중 언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병원진단서(보육교직원의 정신과 상담), 심리상담 기록 등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육 현장

- A 첫째, 보육교직원 존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전화 자동응답을 통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안내하거나, 어린이집 현관이나 가정통신문 한쪽에 보육교직원 존중의 문구(예: 존중받는 선생님, 잘 자라는 내 아이 / 육아의 가치, 보육교직원 권익과 같이 등)를 삽입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담임 선생님 칭찬 릴레이, 보호자의 일일교사 참여,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권리존중 퀴즈대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 발생된 경우 어린이집 대응방안으로 우선 보호자와의 상담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시도하여 우선은 보호자의 불만을 경청 후 어린이집에서 제공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보호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고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흉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제해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2**Q**

아동학대 신고 이후, 검찰 무혐의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일부 원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다른 보호자와 동네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인 어린이집 건물 외벽에 '아동학대 교사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는 문구를 붙였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어린이집 건물 벽에 귀하를 특정할 만한 개인정보(이름 등)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가 00명(20XX. 00. 00. 기준)인 점, 어린이집정보 공개 포털 등을 통해서도 원장 외 보육교사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제3자로서 해당 벽에 부착된 문구를 통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를 인식하거나 유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외벽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귀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업무방해



개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법적근거 : 제314조(업무방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이 적법하게 보육업무를 수행	<input type="checkbox"/>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input type="checkbox"/>
업무의 방해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저는 아동학대로 신고 받은 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제가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해당 내용을 상정했어요. 또한, 어린이집 온라인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 다른 보호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 방해를 받았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른 사례

귀하께서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지침상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무를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복직교사의 원아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의결을 하여 이를 공고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귀하께서 원아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보육활동의 업무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 보육활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2

Q

원아의 보호자가 늘 낮잠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아동학대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내 연락을 왜 안 받느냐, 가만히 안 두겠다, XX” 등 협박성 발언과 사과를 강요하고 있어요. 또한,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제기하고, 경찰 및 구청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화를 걸어온 횟수, 통화 시간, 전화를 걸어온 당시의 상황 등을 두루 살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흔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물지 아니하므로,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합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판결 등).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나 보육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임을 알면서 전화를 계속 걸고 통화를 요구해서 정상적인 보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면, 이 또한 위력을 행사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06 손괴



개념

어린이집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손괴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 또는 어린이집 소유의	<input type="checkbox"/>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input type="checkbox"/>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수료 사진을 찍었는데 소매 밖으로 유아의 내복이 나온 사진을 보시곤 액자를 던지며 교사 자질 운운 했어요. 포토샵으로 수정 처리된다고 했는데도 제가 처음부터 잘 보지 않았다면 분노하셨죠.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훼손하여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면 성립됩니다. 수료사진 속 내복이 보인다는 사유로 액자를 던져서 깨쳤다면 명백한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상담사례 2

Q

제가 감염병에 걸리고 난 며칠 후에 아이가 확진되었다고 제가 옮겼으니 책임지라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간에 찾아와서 소리치고, 얼굴에 폭력을 가하며 비치되어 있던 물품들을 집어던져 파손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원아가 생활하는 보육실·교사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은 어린이집의 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호자가 집어던져 파손했다면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분노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고의가 명백 하기에 고의로 인정되며, 파손된 물건의 실비, 수리비까지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른 사례



상담사례 3

Q

아동학대를 의심한 원아의 보호자가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실에 있는 의자를 넘어트려 파손했어요.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대다수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영유아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무단출입하여 난동 중 집기·비품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07

성폭력 범죄

개념

강제추행, 강간,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등 행위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성폭력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립요건

요건	확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input type="checkbox"/>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input type="checkbox"/>
그 사람(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input type="checkbox"/>
촬영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Q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담임교사의 개인번호를 안내 해주는데요, 한 원아의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자꾸 음란한 사진이나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요.

A 해당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음란한 사진·영상·문구 등을 반복 전송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경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 글, 영상, 사진 등을 통신매체(휴대전화, SNS 등)를 이용해 전송하면 성립합니다. 보호자가 교사에게 음란 사진 및 문구를 보내는 행위는 본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8

성희롱



개념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희롱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input type="checkbox"/>
성적언동으로 인해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담임교사인 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며,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와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 후에도 제 개인 SNS를 찾아 게시글을 보고 반말로 친구에게 농담을 던지듯 아는 척을 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굴욕감을 주는 성적 언동 또는 요구(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데이트 요구, 사적만남 요구, 사적 SNS 추적 및 내용을 이용한 접근, 반말, 친한 척, 농담 형식의 접근, 개인적 관심 표현 등도 포함됩니다. 즉, 직접적 성적 표현이 없어도, 상대가 불쾌·모욕·압박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자”, “맛있는 거 사줄테니 나오라”는 명백하게 사적 친밀 관계를 요구하는 성적 언동으로 인정됩니다. 또, SNS를 뒤져보고 사생활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반복적·사적 관심은 스토킹에 준하는 성희롱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반말, 친구처럼 농담하는 태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관계를 무시한 지위 이용적 언동으로 업무상 지위 불균형을 악용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반복적 전화 및 접촉 또한 반복성이 있을 경우 성희롱과 스토킹처벌법(접근 요구, 전화 등) 적용 가능합니다.



09

불법정보유통 행위



개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육교직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불법정보유통 행위(명예훼손)

요건	확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통하여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input type="checkbox"/>
공공연하게	<input type="checkbox"/>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input type="checkbox"/>
명예를 훼손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작은 상처가 나면 보호자는 사진을 찍어 어린이집과 담임교사를 욕하는 글을 SNS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글로 올렸어요. 지인들과 댓글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았고 이에 담임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근무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보호자가 어린이집과 담임교사를 비난하는 글 및 욕설을 SNS에 게시한 점,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계정에 업로드 한 점,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악성·비방 발언이 반복 확산된 점을 통해 담임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근무 곤란 상태를 초래하였기에 불법정보유통 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게시물 스크린샷, 게시 시각, 댓글, 공유내역, 계정 정보(공개 여부 포함)를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SNS가 게시된 플랫폼에 신고·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

Q

책상 위에 올라간 원아가 넘어지려고 하여 손을 뻗어 잡아당기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날 원아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팔을 잡아 당겨 아팠다고 이야기했고, 보호자는 CCTV를 보여 달라고 했어요. CCTV 화면 속에 제가 원아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고 보호자는 아동학대라고 신고했어요. 이후 맘카페,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 교사라고 하며 사건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어졌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의 게시글, 댓글, 신문 기사 등을 즉시 캡처하고 URL 등을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페나 게시글의 운영자(온라인 포털, 신문기사)에게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의 경우, 별도의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수집한 캡쳐 자료 등을 발송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에 대한 즉시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하셔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악성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지속되는 경우, 문제되는 악성 게시글을 특정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육
현장

A 선생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다음 단계로의 전진이 가능합니다. 억측과 오해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이므로 더 무너지기 전에 심리적 회복에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 번의 상담으로 회복되기 어려우니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건강한 자신을 가꾸는데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www.dampool.com)에서 진행하는 심리 상담(최대 5회까지 무상지원) 및 한국보육진흥원 마음 UP 검사 (www.kcpi.or.kr/mind4u)를 통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심리상담이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관련 판례)

법원 역시 보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 유형을 일률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판례들은 어린이집 교사의 신체접촉을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연령,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체접촉을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우〉

- 1) 감정적 대응에 따른 폭행 행위(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매트 위에 눕힌 채, 아동이 발을 차는 등 몸부림을 치자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표재성 손상을 입힌 행위, 울산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2031 판결)
- 2) 위험한 방식의 제압(어린이집 원장이 낮잠을 재우기 위해 1세 아동의 얼굴을 이불에 묻게 한 채 잎드려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약 11분간 압박하여 질식사하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합180 판결)
- 3) 훈육 목적을 벗어난 강압적 신체접촉 행위(남은 반찬을 억지로 먹이거나,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아동 연령에 비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거칠고 신체 손상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체접촉을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1) 훈육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리적 조치(보육교사가 하원을 거부하며 떼를 쓰는 3세 아동을 들어 올려 화장실로 이동시키려고 한 것,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8. 선고 2023고단1332 판결)
- 2) 교육적 목적의 훈육 행위(발달장애 아동을 전담하는 교사가 놀이도구를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아동의 팔을 잡은 행위)
- 3) 일상적 보육행위 중 경미한 접촉(다소 거칠게 로션을 발라준 행위, 취침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 발로 엉덩이를 경미하게 민 행위 등)

10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개념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1

2세 원아가 저녁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해서 원아 바지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어요.

Q2

같은 반 원아들과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바보라고 놀린다고 항의하여 교사가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결국에는 원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어요.

Q3

식사지도 중 원아가 옷에 음식물을 많이 흘려서 닦아주는데 멜빵바지 앞주머니에 딱딱한 게 만져져서 무엇인지 확인하였더니 녹음기였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에 따르면 본인의 대화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녹음한 사람(보호자)은 대화 당사자가 아니며, 영유아는 법적 의사능력이 없어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사·원아들의 모든 음성이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 녹음입니다. 즉, 아이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것은 '도청 장치 설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위법성이 큽니다.

11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개념

보호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하여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실내공기가 쾌적하지 않다면,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기계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전자 알림장을 통해 장문의 글을 수차례 작성하며 감정적인 민원 제기를 하고 있고요, 원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 구청,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에 전화를 하여 반복적인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에서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 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귀 시설의 여건에 따라, 모든 개별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개별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시설 운영 기준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향후 조치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모든 소통내용 및 대응 조치 등은 기록으로 남겨 문서화 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보육
현장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비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목적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 첫째, 본 사안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차례의 민원으로 인해 보육교직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부모와의 대화나 면담의 기회가 있을 시 차분한 태도로 부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로부터도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 전달해 주세요.

부모의 잦은 민원이 교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6에는 보호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니 보호자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의 의견개진은 근무시간 내에 해주실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교사들 또한 근무시간 내에서만 전자알림장 등 부모의 알림을 확인토록 하여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 주세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해서는 직접 보육을 제공하지만, 영유아의 가정 즉, 부모를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부모에 대해 공감하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와 어린이집에서 마련한 실내공기질 유지 방안에 대해, 또는 현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자세한 안내를 하시어 부모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제시하는 다른 의견이 있다면 수용 가능한 사안일 경우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공식적 의결 과정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12

부당업무 강요 행위



개념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유아와 달리 영아의 경우 순간포착으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 없었죠. 그러자 보호자는 '우리 아이는 왜 눈을 마주치는 정면사진이 없느냐, '다른 아이들에 비해 사진 수가 부족하다, 신경 좀 써서 많이 찍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와 같은 이유로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보육업무가 아닌 사진 촬영에 대한 부당업무를 강요받았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보육교직원의 주요 업무는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 지원이 우선이며, 개별 아동의 사진을 특정 방식으로 반복 촬영하는 것은 법적 의무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업무 요구에 해당합니다.

영유아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는 학기 초 영유아 보호자에게 공지를 통해 촬영이 영유아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 특정 원아만 반복 촬영하거나 연출 사진을 지속 요구하는 것은 수행할 수 없는 부당 요구라는 점, 사진 제공은 정기적·공평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른 사례

삼달사례 2

Q

어느 날, 원아는 아빠가 머리를 묶어준 채로 등원했어요. 하원할 때 원아의 엄마는 “아빠가 머리를 잘 묶지 못해 당연히 등원하면 선생님이 머리를 다시 묶어줄 줄 알았는데 묶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전자알림장을 보니 하루 종일 머리가 엄마인 채로 놀았네요?”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五

A 보육교사의 핵심 직무는 ‘놀이·상호작용 중심 보육 제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 의무, 부모와의 소통·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문의하신 영유아의 헤어스타일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미용 목적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보육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 머리 묶기는 보조적 지원이며 지속적·개별 유지 요구는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아동 스스로 단정함을 유지하도록 돕되, 미용 서비스 수준의 요구는 거절 가능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3

Q

3월 입소 원아의 신학기 적응기간에 대해 안내드리자 맞벌이로 3월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입소 전인 2월에 적응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원의 규정에 대해 안내하며 어렵다고 답변 드리자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부모가 원하면 다 해줬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며 화를 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보육
현장

▶ 여은야보윤번 제18조이6에는 보호자의 이름과 면기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애써 보우교지월에 대한 조준이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보호자는 제18조의 5에 다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조신설 2024.2.6.]



상담사례 4

Q

어린이집에서 유아 간 서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교구장에 팔을 부딪치며 상처가 났어요. 담임교사인 저는 즉시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며 치료를 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저에게 '아이의 상처가 흉질 거 같으니 큰 병원에 가야겠다, 아이가 다친 상황에 대해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어 심리상담을 받아야겠다'며 치료비 등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보육
현장

A 보육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사안에서, 보호자가 담임인 보육교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추가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요구는 보육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책임을 강요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부당업무 강요 행위로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른 사례



13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개념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

초등학교 가기 전 받아쓰기와 알림장 쓰는 방법을 어린이집에서 연습시켜 달라고 했어요. 저희 어린이집은 놀이 중심으로 원아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글자 형태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다른 원아들의 보호자와 소통하며 단체로 교사에게 받아쓰기와 알림장 작성 연습을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영유아보육법 및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자율적 경험 중심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선행학습·초등 준비 학습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 정당한 보육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즉, 법령상 보육계획은 원장·교사가 수립하며 보호자가 개별 아동에 대해 특정 학습을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보육 현장

A 어린이집에서는 놀이 중심 보육의 법적 근거를 가정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놀이 중심, 발달 적합성 등을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문해 활동은 자연스럽게 진행 중임을 안내하여 보호자의 걱정과 염려를 감소하고자 노력합니다. 즉,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적정 문해 활동·놀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정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2

Q

겨울에 아이들과 눈길을 걸으며 발자국 찍기 놀이를 하려고 바깥놀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연락 와서 '우리 아이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으니 바깥놀이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반은 담임교사가 한 명뿐이라 바깥놀이를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반에 가서 언니, 오빠나 동생들과 놀이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반에 가서 놀이를 하는 것도 아이가 낯가려서 안 된다며 무조건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보호자는 자녀의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다른 원아의 활동 중단을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간섭은 보육 활동 부당 간섭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보호자가 감기 기운을 이유로 원아의 참여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전체 활동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육 현장

A 어린이집 보육계획은 안전·발달·교육적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보육활동의 운영 주체는 어린이집·교사·원장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체 보육활동 변경 요구는 수용 불가함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계절,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영유아의 컨디션이 늘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당 원아에게만 실내놀이 대체를 제공하는 등 개별 조정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보호자에게는 겨울철 바깥놀이의 교육적 필요성(대근육 발달, 자연 탐색, 감각놀이 등 장점)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른 사례

14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개념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례 Q & A



상담사례 1

Q1

저희 반에 A 원아가 B 원아를 때리는 일이 생겨, 친구를 때리지 않고 속상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했어요. 이후 하원할 때 A 원아의 보호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전달 드렸더니,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며 절대 다른 아이를 때리는 아이가 아니라고 현관 앞에서 삿대질하며 큰소리쳤어요.

Q2

저희 반에는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부딪쳐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한 약속이에요. 한 원아가 교실에서 계속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도했는데, ‘왜 우리 아이를 괴롭히느냐, 아이들은 원래 뛰면서 자라는 거다’라고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화를 내며 민원을 제기했어요.

*현장사례 기반 재구성

법률

A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정
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시행 2025.6.22.]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위험 행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를 때리지 않기’, ‘교실에서 뛰지 않기’ 등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이며, 이를 부당하게 문제 삼아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도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육 현장

A 첫째, 생활지도는 ‘정서적 처벌’이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발달적 지도임을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뛰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으나, 보육실 등 실내 공간에서는 또래 간 충돌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는 즉각적인 제지와 함께 친구를 때리지 않고 속상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단체생활 적응을 돋기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합니다.

둘째, 가정에 안전사고 사례 및 규칙 제정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해당 규칙이 특정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기관 내 공통 규칙이라는 점, 기존에 때리거나 부딪쳐 다친 사례가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급 운영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보호자가 간섭하지 않는 교사 고유의 영역임을 안내합니다. 보호자가 “우리 아이는 예외로 해 달라”는 요구는 단체 생활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원아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사항임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III

부록

- 1.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 안내 44
- 2.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료집 안내 55

01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 안내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 안내

<https://www.damp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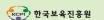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1)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01 안내 사항

1.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은 영유아 보호자로부터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 심리상담, 보육현장 전문가로부터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신청 정보는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4. 법률, 보육현장 상담은 **2회**, 심리상담은 **5회 무상지원**됩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2)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보육현장 상담은 2회, 심리상담은 5회 무상지원**)

02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접속 방법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https://www.dampool.com/>) 검색 및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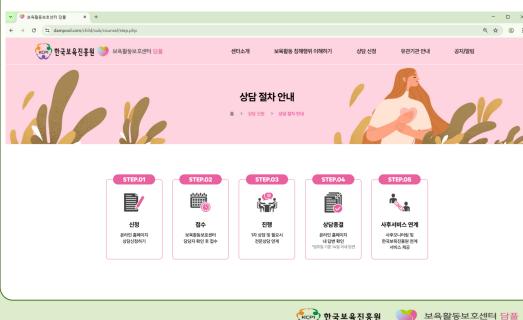


3)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www.dampool.com)에 접속합니다.

03 상담 절차 안내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 절차 안내]



4) 상담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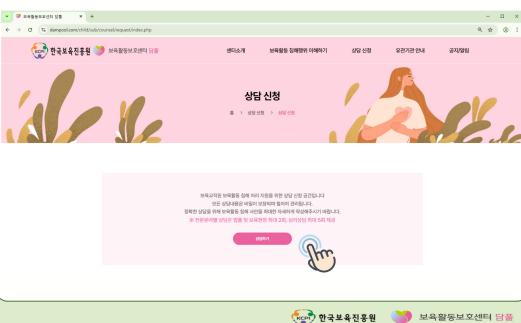
4)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상담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 → ② 접수 → ③ 진행 → ④ 상담 종결 → ⑤ 사후서비스 연계)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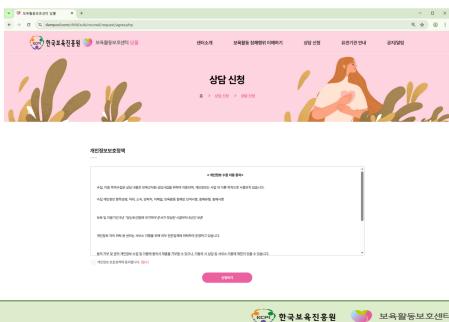
- 별도의 로그인없이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별도의 로그인 없이 상단의 ‘상담신청’을 클릭하신 후,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필수)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6) 상담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상담신청 인적사항

소속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립마련인입 <input type="checkbox"/> 시립체육마련인입 <input type="checkbox"/> 민간체육마련입 <input type="checkbox"/> 민간마련인입 <input type="checkbox"/> 경기마련인입 <input type="checkbox"/> 협동마련인입 <input type="checkbox"/> 체장마련인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button" value="기타"/>
성명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별명 바꾸면호"/> <input type="button" value="별명시 이름을 바꾸면호입니다"/>
직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장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에서 입력해주세요
연락처 *	<input type="text"/> 연락받으실 우편번호를 입력해주세요 <input type="button" value="이메일"/> <input type="button" value="연락처로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 상담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 소속
- 성명
- 열람 비밀번호
- 직급
- 연락처
- 이메일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률

7) 상담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보육활동 침해인 인적사항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침해여부 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O <input type="checkbox"/> X * 미리강사 내용에 따라 유기기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아 보호자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친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에서 입력해주세요
성명	<input type="text"/>
침해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고 <input type="checkbox"/> 상처와 폭행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영재제한 및 모욕 <input type="checkbox"/> 사이버霸력 <input type="checkbox"/> 보육환경 중 무단 분양 및 노동·세포장치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친해여기 행위 <input type="checkbox"/> 보육환경 부당간섭행위 <input type="checkbox"/> 부당입우 강요행위 <input type="checkbox"/> 청년인 생활지도 방해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button" value="기타"/>

✓ 보육활동 침해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침해사항 여부
- 영유아 보호자 유형
- 성명(선택사항)
- 침해유형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률

8) 보육활동 침해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침해사랑 진술 *

보육활동 절차 상담신청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요지 작성)

✓ 보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요지 작성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9) 보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해 작성합니다.

작성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전화면담 동의여부 *

이 항목은 상담을 위해 필요시 사건면접 참여를 위한 전화면담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면담 동의여부는 연락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3순위까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만 문자로 확정된 연락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 1순위 | 상담가능 요일 및 시간을 기재해 주세요. |
| 2순위 | 상담가능 요일 및 시간을 기재해 주세요. |
| 3순위 | 상담가능 요일 및 시간을 기재해 주세요. |

✓ 전화면담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시 사건정황 파악을 위한 전화면담 요청 가능
- 전화면담에 동의하신 경우, 연락 가능한 요일과 시간 3순위까지 작성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10) 전화면담 동의여부를 체크합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전문가 연계 동의여부 *

상담신청 내용에 따른 전문 상담연계 필요시, 보육활동보호센터의 고충처리전문단이 상담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동의'로 선택한 경우 해당

전문가 연계에 동의한 경우 회의하는 전문서비스 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보육현장전문가

*'전문가분야'를 선택한 경우 해당

어떤 방법으로 상담받기를 희망하십니까?

서면

설시간 화상(50분 내)

화상(50분 내)

✓ 전문가 연계 동의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전문가 서비스 분야
중복 체크 가능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11) 전문가 연계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때 전문가 서비스 분야(법률, 심리상담, 보육현장)는 중복 체크 가능합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힐링프로그램 정보제공 동의여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후 연계 힐링프로그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필요한 경우 또는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사용해주세요.

파일은 첨부해 주세요. 파일의 용량은 5mb 미만까지만 가능하며 jpg, png, tif와 같은 확장자만 가능합니다.

파일첨부

✓ 힐링프로그램 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첨부파일은 필요한 경우
또는 증빙자료가 있을 때
첨부해주세요

- 파일 용량 5mb 미만 가능
※ 용량 초과 또는 파일이 여러 개로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메일 주소
(dampool@kcpi.or.kr)로 발송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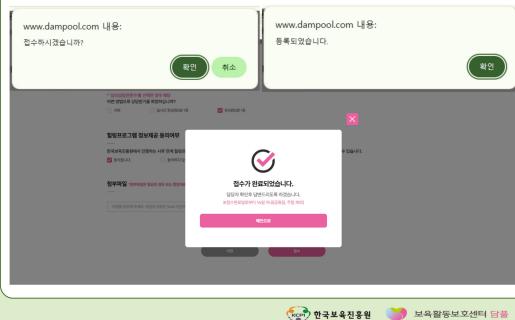
12) 힐링프로그램 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체크합니다.

13) 첨부파일은 필요한 경우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 접수완료 후 14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답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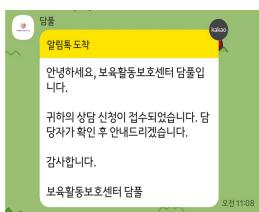
14) 하단에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완료 후 14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답변드립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Web발신]
안녕하세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입니다.
귀하의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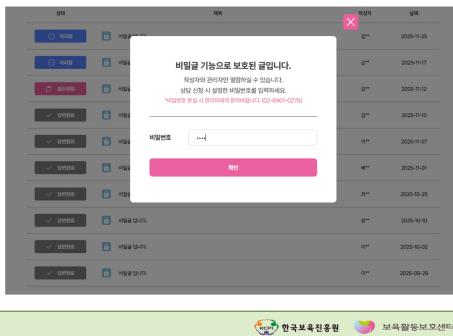
✓ 접수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담풀 알림톡 및
문자메시지로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5) 접수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담풀 알림톡 및 문자메시지로 상담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04 상담신청 방법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상담신청] > [상담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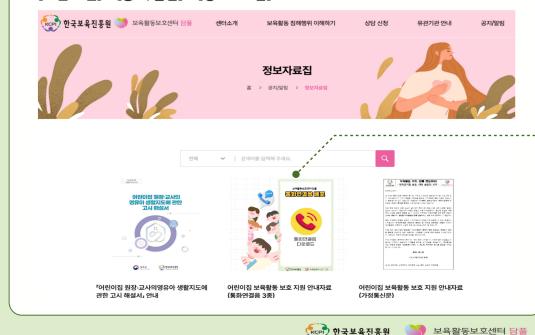
✓ 답변이 완료되면,
열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답변이 완료되면, 열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답변 내용을 확인합니다.

05 공지/알림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공지/알림] > [정보자료집]



보육활동 보호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메인화면] > [공지/알림] > [정보자료집]에서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공지/알림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공지/알림] > [홍보물]



•••
보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홍보자료 및 카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내용, 공모전 수상 사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메인화면] > [공지/알림] > [홍보물]에서는 보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홍보자료 및 카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공지/알림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공지/알림] > [홍보물]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안내



보육활동 부당간섭 1편



보육활동 부당간섭 2편



보육교직원 존중 캠페인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서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실천 다짐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19)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 및 QR코드를 통해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안내 등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공지/알림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공지/알림] > [홍보물]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
보육교사 존중, 내 아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캠페인]
선생님을 향한 말, 아이가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20)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 및 QR코드를 통해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 및 캠페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자주하는 질문

메뉴 경로

[메인 화면] > [공지/알림] > [자주하는 질문]



- ▣ 보육활동을 잘 이해하고 별도로 아끼고 있습니까?
- ▣ 상담인원 시, 접수한 비밀번호로 접수하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상담인원 내용은 제3자로 보여집니까?
- ▣ 보호자 어버니 누구나 단지 직장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장은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육활동에 대해 궁금한 주제가 있으신가요?
- ▣ 보육활동 참여하시는 부부연기자님?

✓ 자주하는 질문에서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및 보육활동 침해 유형 등 이용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관련하여 자주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활동 보호, '담풀' 이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

1661-5666



홈페이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www.dampool.com)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친구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검색

친구 추가



인스타그램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dampool_kcpi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22) 영유아 보호자로부터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시, '담풀'이 함께합니다.



02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료집 안내



발간등록 번호
전통판-2025-310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Foundation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 보육활동 침해 개념 및 정의
- ☑ 침해 유형 및 사례
- ☑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등



▲ QR코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등록 번호
전통판-2025-316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Foundation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임사항 등



▲ QR코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Tel. 1661-5666

총괄기획 김윤아(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본부 본부장)

집필진 서영주(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부장)
박진주(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차장)
조하나(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대리)
장윤하(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주임)
정민아(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사원)

검토진 변성숙(에듀로(Edu-law) 교육법률 연구소 변호사)
홍원자(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편집디자인 디자인여백플러스

※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